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72
----------	-------

발의연월일 : 2026. 5. 27.

발 의 자 : 조승래 · 이정문 · 서미화
안도걸 · 김기표 · 정태호
정일영 · 박민규 · 맹성규
최기상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 차원에서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의 연계·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 다.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의 교류 및 기관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마. 국가데이터처장이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바. 국가데이터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 보유현황, 관리체계 및 생태계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국가데이터처장이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처리, 그 결과에 대한 제공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 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등에게 민간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차. 국가데이터처장이 반복적인 정책 수립·평가, 국가안전보장·재난 대응, 장기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세트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조).

카.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 지원, 국가데이터 품질진단, 국가데이터플랫폼 및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운영 및 국가데이터 활용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5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국가데이터”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 간 결합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가. 인구·산업·고용·노동·재난·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안전, 재난대응 또는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의 창출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나. 국민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 수요 또는 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3.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4.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를 말한다.

5.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처리”란 국가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데이터의 민감성,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데이터 교류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4.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결합·분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가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데이터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국가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 및 국가데이터의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질서유지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

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 등

제6조(국가데이터위원회) ①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플랫폼 및 이용센터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화 등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 간 협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조정과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무개선에 관한 사항
 10. 제24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제2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및 실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제2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2. 데이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데이터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데이터의 관리 기반에 관한 사항
4. 국가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5. 국가데이터의 이용 확산 및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가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비식별 조치 및 암호화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공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및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의 관리체계 현황

2. 국가데이터 활용 기반 및 생태계 현황

3. 국가데이터 관리·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요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 제12조(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하려는 데이터가 국가기관등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통해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4.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데이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해당 데이터의 국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데이터가 민간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 지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의 관리·활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어려운 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과 관련하여 대상 데이터의 사전 품질 진단·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사전 품질진단·평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2.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

색 및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유지 지원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마련

4.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등을 통한 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6.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국가데이터의 제공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관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플랫폼 내에 국가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데이터의 지정해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거나 국가데이터를 보유·관

리하는 자의 지정해제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류체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류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분류체계 구축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가 미흡하거나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부실함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데이터 품질관리) ①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해당 국가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판정을 받은 국가데이터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가 우수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로 지정이 필요한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품질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8조(국가데이터 이용센터)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이하

“이용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2. 국가데이터의 분석 자료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
3. 국가데이터와 제19조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
4. 제22조에 따른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5.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이용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고, 보유·관리하는 국가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이용센터를 통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이용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이용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이하 “계약에 의한 구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민간법인등에 해당 민간법인등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데이터를 제공한 민간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 및 민간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플랫폼의 구축·운영 중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등을 통한 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이용센터 내에서의 국가데이터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무
3. 국가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결합·가공 등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제공에 관한 사무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데이터 및 국가데이터와 관련한 추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센터 내에서 국가기관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

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국가데이터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데이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의 민감성, 유출 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이용 목적 범위 등의 조건을 붙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⑦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과세정보 처리 특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 과세정보를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연계·결합·활용하려는 경우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국가데이터를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의 이용 절차를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의 분석·활용과정에서 보관·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다.

1. 반복적인 정책수립·평가 또는 행정적 검증에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 재난대응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 또는 구조적 변화 분석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동일한 연계·결합의 반복 수행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이용센터를 운영하는 소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세트에 개인정보 등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안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의 보호 등) ① 국가데이터의 이용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하여 제공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으로부터 국가데이터의 제공·분석 및 활용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관리체계에 관한 보안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 보유·관리기관의 장(단, 민간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의 연계·결합 시 적합한 비식별 조치 및 안전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제25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관리

· 연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이하 “데이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데이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데이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데이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 운영 및 전문기술의 지원
3. 국가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등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4. 국가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의 지원
5. 이용센터의 운영의 지원
6. 국가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전문기술의 지원
7. 국가데이터 안전성 확보, 비식별 조치 및 암호화 등에 관한 연구 개발 지원
8. 국가데이터의 교육·홍보·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의 지원
9. 다른 법령에서 데이터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데이터원에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데이터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데이터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데이터원이 아닌 자는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⑩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데이터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데이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데이터 전문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 전문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 관련 정책, 제도 및 기술 조사·연구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분석
3. 제16조에 따른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 작성·관리 기준에 따른 조사·작성 및 표준화 업무 지원
4. 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5.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 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민관협업체의 설치·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업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업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품질인증)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 품질진단·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등 국가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증, 메타데이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실증, 표준 개발 등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육·훈련의 지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와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관리·연계·활용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관리·연계·활용 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해외협력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기술 지원 및 전수를 위한 교류활동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3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2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다음 계획기간 시작 시점 전까지로 한다.

제3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 준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데이터원의 정관

2. 데이터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 ③ 데이터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가데이터처장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데이터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데이터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한국데이터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

- 단법인 연합회는 데이터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재단법인 연합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데이터원의 설립과 동시에 데이터원이 포괄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데이터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를 데이터원의 명의로 본다.
- ⑤ 데이터원의 설립 이전에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데이터원이 행한 행위 또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연합회의 임직원은 데이터원의 설립

등기일에 데이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일로부터 기산한다.

⑦ 데이터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기존 기관의 기관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임기가 종료된 기관
장에 대하여는 그 처우와 신분 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
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